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7

발의연월일: 2021. 3. 9.

발 의 자:이주환・김기현・金炳旭

김예지・김용판・박대수

배준영 • 윤창현 • 지성호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대상 행위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법률 제 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 자가 공급받게"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취득하게"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 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 |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 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 득하게-----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7년 이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 반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 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 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